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3년 3월 7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드론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육성사업의 추진·지원 근거 등 효율적인 드론산업의 육성·지원체계 구축 등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드론산업 육성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시행(안 제4조)

다. 드론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안 제5조 ~ 안 제10조)

라. 드론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사업지원(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마. 수탁자등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13조)

##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 가. 제출배경

- 현행 조례는 충북도의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2020년 4월 10일 제정되었음
- 드론산업은 기술과급력이 높은 ICT융합산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미래항공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충북도 내 기존 산업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기반 구축을 위해 드론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현행 조례 시행과정에서 위원회 운영 등과 사업추진에 있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전부개정을 통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본칙 14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4조**는 드론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신설한 것으로 드론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해 보임
- **안 제5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현행 조례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데 반해, 개정안에는 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였으며,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는데, 차후 실무위원회 없이도 위원회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6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2항과 제5항은 위원장을 경제부지사에서 과학인재국장으로, 부위원장을 호선에서 업무 담당 과장으로, 제4항에서 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격하’한 것과 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만 구성하고 심의·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관(官) 주도의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려는 것임
- 이것은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각종 위원회가 과다하고, 실질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은 설득력은 있으나,
- 드론산업의 특성상 민간의 기술력과 경험 등 민간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민간주도가 아닌 관주도의 위원회 운영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등이 우려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관련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안 제7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과 비교할 때, 안 제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척 등의 사유를 제1호에서는 강화한 반면, 제3호에서는 완화하였음

- 제3호에서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증언, 감정 외에 진술, 자문, 연구, 용역을 삭제하여 제척·기피·회피 조건을 완화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안 제11조는 ‘드론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으로 현행 제8조(각종 지원사업)의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임

- 다만, 현행 조례 제9조에는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4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제5호에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을 추가하는데 그쳤음

-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은 이들의 협력을 통해 드론산업 활용 연구와 개발을 비롯하여 드론 활용 인력양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전부개정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중요성과 사업 규모의 증가, 드론의 활용도 증가 등에 따라 드론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관련 사항과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체계와 구성 등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
- 다만,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두도록 강행규정화 했는데, 위원회 구성을 ‘격하’한 점, 현행 조례의 실무위원회를 삭제한 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있어 그 조건을 완화한 점 등 앞서 지적한 사항들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편·타당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